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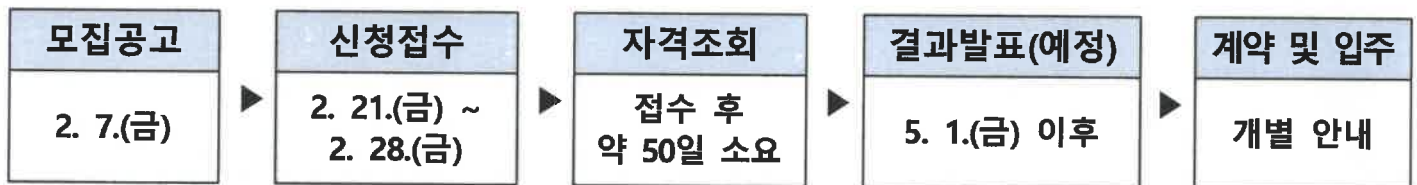
2020년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모집공고일: 2020. 2. 7.(금)
- 모집공고일(2020. 2. 7.) 현재, 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계신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I 공급개요

1. 공급일정



2.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 모집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호

- ① 본 모집공고는 전세임대 예비입주자(공급호수의 약 3배)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공급일정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 50㎡ 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지원가능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태아를 포함)는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
 - 중증장애인 혹은 특수한 경우의 1인 가구는 60㎡ 이하까지 허용
- ③ 전세지원금 지원한도액: 호당 9,000만원(입주자 부담금 5% 포함)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II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1. 신청자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0. 2. 7.)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에 근거)으로서 아래의 1순위,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 단, 전세임대 지원을 받고 있는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 신청자격 세부내역

구 분	유 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저소득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인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비 고	우선 입주대상자	※ 공급물량의 2%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기준

(단위 : 원)

구 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2,700,907	3,082,601	3,349,933	3,674,445	3,998,958
월평균소득 70% 이하	3,781,270	4,315,641	4,689,906	5,144,224	5,598,542
월평균소득 100% 이하	5,401,814	6,165,202	6,699,865	7,348,891	7,997,917

○ 자산 기준

구 분	내 용
총 자산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0,0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	비 고
① 신청자 및 배우자	배우자는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②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④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

*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불가(자녀 양육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제외)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업대상지역”이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인천광역시 전체(8개 구, 2개 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모집공고일(2020. 2. 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2.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동일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배점항목표(국토부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지 2 서식)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¹⁾·창업²⁾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지자체(인천광역시)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3. 부양가족의 수(세대주 제외)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1명:1점, 2명:2점, 3명이상:3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1점)(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1점)에는 별도로 가점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만 인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4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2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 인정
6.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80% 이상 : 5점
 나. 65%이상 80% 미만 : 4점
 다. 50%이상 65% 미만 : 3점
 라. 30%이상 50% 미만 : 2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음
-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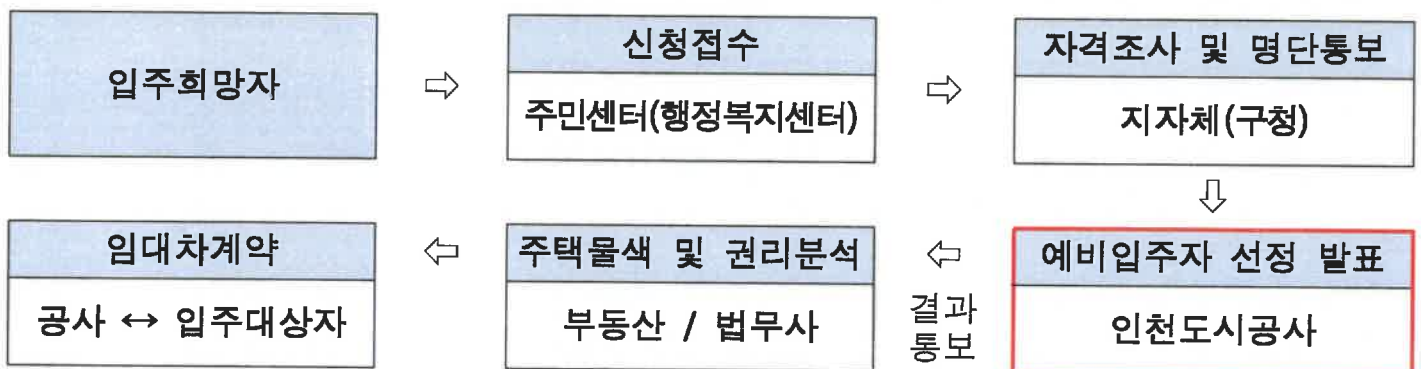
Ⅲ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9,000만원			
	지원한도액 이하		지원한도액 초과	
	450만원 범위 내(지원한도액 5%)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 입주자 부담	
월 임대료	• 지원 금액별 적용금리 및 임대료			
	주택도시기금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적 용 금 리	1%	1.5%	2%
	우 대 금 리	1자녀(0.2%), 2자녀(0.3%), 3자녀(0.5%), 수급자(0.2%) 등 최저 1%		

Ⅳ

입주자 선정 및 계약체결 절차



Ⅴ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0. 2. 21.(금) ~ 2020. 2. 28.(금)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신청접수 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7:00까지

※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우편/팩스 접수 불가)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2. 신청 시 구비사항]의 [신분증 및 도장] 부분 참조)

2. 신청 시 구비사항

○ 기본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0. 2. 7.)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비서류	참고사항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주민센터)에 비치, 모집공고 시 홈페이지에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 접수장소(주민센터)에 비치, 모집공고 시 홈페이지에 첨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유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상 해당 지역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내역 포함)
신분증 및 도장	•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 추가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거지원 시급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 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자,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 (확정일자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 가능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실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저소득 고령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자,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해당 시 제출)	• 2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장애인 -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 기재 후 서명
자산보유사실확인서 (해당 시 제출)	• 2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장애인 -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 기재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가점부여 관련서류 (해당 시 제출)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의 취업·창업 증명서류(해당자)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입증 서류(해당자) • 가입은행 및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0. 02. 07.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2020980006
기타서류 (해당 시 제출)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해당자)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18.12.19.)에 따라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3.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일 시 : 2020. 5. 1.(금) 이후(자격조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장 소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mcd.co.kr) 게시 및 입주지원 안내문 우편발송(개별)
- ※ 군구의 예비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VI

기타사항

○ 자치구별 공급(모집)호수

구 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공급목표	700	40	30	131	40	101	161	77	97	19	4
1순위	1,400	80	60	162	80	202	322	154	194	38	8
2순위	700	40	30	131	40	101	161	77	97	19	4

○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예비 입주자 선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로 안내된 기간 내에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일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할지라도 계약시기가 늦어지면 예산 등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 시 인천광역시 내 주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접수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들께 안내문이 개별통보(우편발송)되기 때문에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인천도시공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입주자격	· 1인 가구 및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50㎡(특수한 경우 60㎡) 이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영구임대주택 퇴거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입주자격을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주대상 중 인천도시공사 및 타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장기체납, 불법, 전매 등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금대출 상환	·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상환시 입주불가)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자산 및 소득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해야 합니다.
기타사항	· 전세지원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접수 관련 :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주거복지사업팀

• 검색대상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③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0) - 집전화 () -	해당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신청순위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월평균소득 70%이하) ☐ 고령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월평균소득 100%이하)	
	☐ 무주택 ☐ 자산 및 자동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주택 및 자산현황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자산 및 자동차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및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월	()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사관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년	()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인	()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2자녀(민법상 미성년자) 1자녀(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3점 2점 1점 1점 1점	- 자녀수() - 부양() - 장애인()	()점 ()점 ()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회	()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임식부의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거주한 경우 인정		전용임식부,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4점 2점	- 전용수세식화장실() - 전용수세식화장실()	()점
⑥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미만 다. 50% 이상 65%미만 라. 30% 이상 50%미만	5점 4점 3점 2점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인천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보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사항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공적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가입내역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금(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인천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 안내문 등의 e-메일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물건 소재지	금액	계약자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구청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